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

■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제221195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안 별표 2)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성일종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8. 4.

다. 회 부 일 : 2025.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신설>	○ 별표 2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안전기금)

현행법 제5조¹⁾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성일종위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 이하 “도로교통법개정안”이라 함)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명	도로교통안전기금
재 원	◦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정부는 정부출연금으로 아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 -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정) -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 제3항에 따른 차입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의 수익금
용 도	◦ 제3조, 제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제73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관 리	◦ 경찰청장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²⁾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조 2,83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이자 2022년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임.

2)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따위의 사고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신호기·신호등·안전표지)³⁾ 등의 체계적인 설치·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함)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통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의 사업을 他 일반회계 사업과 달리 특별히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으며, 도로 안전점검,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해 현

3)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재 경찰청 과태료·범칙금 수입 이상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지원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기금 신설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은 재원 이양⁴⁾과 함께 지자체로 既 이양된 사업으로, 기금을 신설하여 지방 이양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한편, 경찰청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이 제때 설치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교통인프라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교통안전교육의 확대 및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 신설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임.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임으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⁵⁾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

4) 2단계 지방이양사업('22~23년)시 국고보조사업 총 2.3조원을 이양하는 대신 지방에 5.6조원의 재원을 확충

5)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개정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및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 중 정부의 출연금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⁶⁾(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6)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정) 및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는 특정 세입으로 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은 인정되며, 해당 재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납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과태료	부과	2,122,089	2,293,491	2,406,482
	납부	1,141,266	1,228,436	1,318,886
범칙금	부과	81,214	76,024	80,536
	납부	81,214	76,024	80,534

자료: 기획재정부

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용도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으므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적시성 있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현재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의 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⁷⁾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

7)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는 경찰청이 기금으로交通安全시설의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현행 경찰법상 경찰사무의 이원화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交通安全시설 관리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2025년 예산	회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⁸⁾	국토교통부	1,134,300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유지보수	국토교통부	866,500	교통시설특별회계
交通安全・소통확보	경찰청	305,200	일반회계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도로교통법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
 가 있겠음.

8) 「도로법」에 따라 일반국도 시설관리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 중이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도로교통법」</u>

문 의 처
02)6788-5152